



명예총장에 관한 규정

규정번호	2-3-26
제정일자	2021.10.01
개정일자	
책임부서/팀·계	기획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라 한다)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명예총장을 둘 수 있도록 하며, 명예총장에 대한 예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(정의 및 주대) 이 규정에서 명예총장이라 함은 본 대학의 전임 총장 또는 교육 및 학술 업적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자로서 이사장이 추대한다.

제3조(임기) 명예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명예총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발전계획에 대한 자문과 조언
2. 학내외 주요 행사 등에서의 학교를 위한 대외 활동
3. 기타 이사장이나 총장이 위탁하는 업무

제5조(예우) 명예총장의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명예총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액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2. 명예총장이 공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 본 대학의 여비규정에 따라 총장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3. 명예총장에 대한 의전상 예우는 총장에 준한다.

제6조(추대의 취소) 명예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대를 취소한다.

1. 기능이 종료된 경우
2. 추대를 취소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